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경상남도회

수 신 회원사 대표

참 조

제 목 하도급법 사각지대 건설분쟁 수·위탁분쟁조정제도 안내

1. 회원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만 적용되어, 하도급법상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 '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16,937개사 중 7,397개사(43.7%)가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

3. 이에 하도급법 적용 제외로 구제받지 못하는 회원사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의 수·위탁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수·위탁분쟁조정제도 개요

○ **근거**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에 따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·운영가. 개정사항

○ **대상** : 수·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규모 요건이 없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사업자와의 분쟁도 조정 신청 가능

-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이거나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경우의 대금 미지급·부당감액 등 분쟁

○ **효력** : 수수료 없음,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

나. 신청방법

○ 중소기업 수·위탁거래종합포털(https://www.smes.go.kr/poll)

[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] 메뉴

다. 문의전화

ㅇ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(☎ 1357 ※내선 9)

ㅇ 협회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(☎02-3284-1026)

붙 임 : 1. 수위탁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부.
2.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

담당자 제도개선실 대리 이희승 과장 이정훈 실장 김우배
시행 전건협 경남 제754호 (2026. 10. 29.)
우5139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0(전문건설회관 2층)
전화 055-288-8117 전송 055-238-1733 / 전자우편 hsl8911@kosca.or.kr